



회복기 재활환자를 위한

재활의료기관

지정운영

시범사업 안내



문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



보건복지부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


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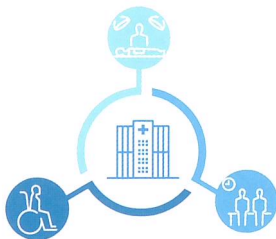
'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'은 뇌손상 또는 척수 손상 환자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급성기 치료 후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시범사업입니다.

관련 법적 근거

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
(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)

시범사업 목적

급성기 치료 후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
적시에 적절한 재활치료 제공



손상, 질병으로 인한
장애 최소화 및 기능 회복

집중재활치료를
통한 조기 사회복귀

시범사업 기간

2017. 10. 1. ~ 2018. 12. 31.

시범사업 대상환자

대상 질환	입원기준	
	입원시기	입원적용기간
뇌졸중 등 뇌손상, 척수손상	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	180일
고관절, 골반,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	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	30일
하지부위 절단	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	60일

튼튼한
전문재활팀

꼼꼼한
환자평가

합리적인
입원기간

회복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
조기에 일상으로 복귀를 돕고자
질 좋은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!



시범사업 기관 지정 방법

- 1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병원 중,
- 2 재활치료를 위하여 우수한 시설, 장비를 갖추고 재활환자를 치료하는 재활의학과 의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사 등 재활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병원으로,
- 3 뇌손상 또는 척수 손상 등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후 회복 시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많이 진료한 경험이 있는 병원을 평가하여 시범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

지역	기관명	연락처
서울(3)	국립재활원	02-901-1700
	의료법인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병원	02-3284-7777
	청담병원	02-2104-2000
인천·경기(5)	로체스터병원	031-821-8052
	린병원	031-8005-1300
	분당러스크 재활전문병원	031-716-0007
	브래덤병원	032-456-7600
	휴앤유병원	032-206-0121
강원(1)	강원도재활병원	033-248-7700
충남(1)	다우리병원	041-575-7100
광주·전남(1)	호남권역재활병원	062-613-9001
대구·경북(1)	남산병원	053-250-1100
부산·경남(2)	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	051-325-9700
	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	051-629-8000
제주(1)	제주권역재활병원	064-730-9000





회복기 재활환자는 어떤 환자인가요?

- A** 본 시범사업에서 정한 회복기 재활환자는 급성기 이후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회복기 단계의 환자를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 뇌졸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뇌졸중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원하였다면 회복기 재활환자에 해당됩니다.

**대상 질환별 입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

지정 기관에 입원하면 환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- A** 회복기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안심하고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기간을 보장합니다.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가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에 지정 기관에 입원하였다면 180일까지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, 필요하다면 90일 연장하여 총 270일까지 입원 기간이 보장됩니다.

시범사업 시행일 이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중인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- A** 대상 질환 및 입원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시범사업 시행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도 대상환자에 해당됩니다.

퇴원 후 재입원하여도 대상 환자로 적용 가능한가요?

- A** 퇴원 후 재입원시 대상 질환별 입원시기에 포함된다면 대상환자로 적용 가능하고, 입원 시기가 초과된 경우에는 대상 환자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대상 질환별
입원시기에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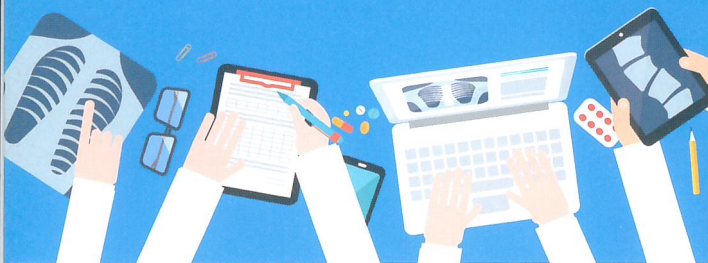


대상 질환별
입원시기 초과



회복기 재활환자를 위한
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
시범사업 안내

문의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



보건복지부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